

의안번호	2203295
의 회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0.
추계번호	24A3329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2(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)	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, 인력, 정보, 설비 및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2(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는 취지라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-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과 관련하여 “공공연구 창업기획 및 사업화 지원”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(2024년 예산 3억원)
 -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“공공연구 창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고도화, 경영 실무 등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”하는 것임

[표 3] 공공(연) 연구자 창업 컨설팅 서비스 항목(안)

분야	지원항목	지원내용
창업기획 컨설팅	BM 컨설팅	○ 창업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개선, 사업화 전략 수립, 시장 규모·경쟁사 조사, 판로개척 등
	경영 컨설팅	○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법률, 세무, 회계, 재무, 인사, 전략, 운영, 조직 등 경영 전반 * (법률) 법인 설립/정관, 투자유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* (회계/세무) 운영자금 관리, 부가세 및 법인세 등 * (재무) 자금조달(기술금융, 크라우드펀딩, 엔젤투자, 벤처캐피탈 등)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이외의 창업 자금이나 인력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¹⁾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1) 제21대국회의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121366)에 대한 비용추계서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추계하였는데, 동 지원 계획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 30~90억원 등 연평균 54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